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

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

□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을 위한 "비정규직 종합대책('11.9.9.)"에 따라 복지 분야 확충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

□ **우선 공급대상 임대주택**

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·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「임대주택법」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(국민임대주택)

□ **관련 법령:**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제32조제5항제5의2호

□ **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기준**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30호 참조)

◈ **고용 불안, 근로조건 취약성, 보호 필요성 및 대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**하여 기준 마련

<1> 기간제근로자(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)

○ **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**로서 **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** 중인 근로자

○ **(제출자료)** 신청서, 근로계약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

※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<2> 파견근로자(『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5호)

○ **파견사업주에게 고용**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한 **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**하는 자로서 **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** 중인 근로자

○ **(제출자료)**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근로자파견계약서,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

※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<3> 일용근로자(『고용보험법』 제2조제6호)

○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**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**이 있는 자

○ **(제출자료)** 신청서,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지방관서 조회 가능)

<4>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○ **"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"**로서 **현 사업장**에서 **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**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해당자(①보험 모집인, ②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, ③학습지 교사, ④골프장 캐디, ⑤택배기사, ⑥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종사자)로서,

※ 단, 택배기사,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(12.5.1.)부터 대상 적용됨

- 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※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하여 미적용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

○ **(제출자료)** 신청서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(근로복지공단 지사 조회 가능)

□ 신청・확인서 발급 절차

○ 신청자는 <별지>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

※ 기간제・파견근로자는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(지)청, 일용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관서로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서 제출

○ (발급 절차)

신청서 제출 → 접 수 → 확인・검토 → 결 재 → 통 보

※ 위 안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개선지도과, 그 외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600-1004(LH콜센터)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2월

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・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

【붙임5】

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 고시 [별지 서식]

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
신청인

①성명		②생년월일	
③주소			
④연락처	전화번호		
	휴대전화번호		
	E-mail		

사업체

⑤사업체명		⑥대표자	
⑦소재지			
⑧연락처	전화번호		

고용형태 및 근무기간	□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임
	□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임
	□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음
	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

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32조제5항제5의2호 및 「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30호)에 해당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,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또는 ○○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

210㎜×297㎜(일반용지60g/㎡(재활용품))

신청인 제출서류	기간제 근로자	1. 근로계약서 2.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 음
	파견 근로자	1.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근로자파견계약서 3.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	
	일용근로자	1.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피보험자용)	
	특수형태근로종사자	해당 없음(산재보험 적용 여부 전산 조회로 갈음)	

◀ 작 성 요 령 ▶

☞ 확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란에는 해당 요건에 표시하되,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합니다.

◀ 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▶

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,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피보험자 이력을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,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정보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만약 신청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)에는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격 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.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